

KOMSA 채용 자격요건 체크리스트

이 자료는 공단 채용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의 자격요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·제공해 드리는 참고 자료입니다. 자격요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심사위원 등의 판단을 통해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.

□ 공 통

구분	점검 사항	확인	비 고
공통 요건	임용예정일 기준 정년(만 60세) 미만이다.	☐	
	(남성) 임용예정일 이전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되었다.	☐	
	임용예정일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.	☐	
	공고문 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.	☐	
상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			

□ 검사직(선체)

구분	점검 사항	확인	비 고
요건 1	① 대학(또는 전문대학)의 해양계·수산계·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다. * 판단기준: 대학졸업증명서 상 전공 또는 학과명 (부전공 / 제2전공 인정)	☐	
	② ①에 따른 졸업일 이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(전문대학 졸업의 경우 졸업 이후 4년 이상)이 있다. * 판단기준 : 해양·수산·조선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* 승무경력 인정 (승무경력 기준)순수승선일(유급휴가 제외)	☐	
요건 2	① 대학(또는 전문대학)의 해양계·수산계·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다. * 판단기준: 대학졸업증명서 상 전공 또는 학과명 (부전공 / 제2전공 인정)	☐	
	② ①에 따른 졸업일 이후 1년 이상의 대행 검사기관의 수습 경력을 보유하였다. * 대행검사기관 : 선급법인	☐	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

구분	점검 사항	확인	비 고
요건 3	선박검사관으로서 경력이 있다. *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해양수산부 소속 선박검사관	☐	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
요건 4	3급항해사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. * 산정 제외 : 3급해기사 자격취득을 위한 실습 경력 * 판단기준: (승선)승무경력증명서 또는 (승선外)경력증명서 * 경력기준 : (승선)순수승선일 (유급휴가 적용제외)	☐	
요건 5	조선기술사 자격을 취득하였다.	☐	
요건 6	조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다. * 조선기사 자격증 분할('23.1.1.) - 조선선체기사, 조선의장기사	☐	
요건 7	조선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하였다.	☐	
상기 7개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			

□ 검사직(기관)

구분	점검 사항	확인	비 고
요건 1	① 대학(또는 전문대학)의 기관·기계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다. * 판단기준: 대학졸업증명서 상 전공 또는 학과명 (부전공 / 제2전공 인정)	☐	
	② ①에 따른 졸업일 이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(전문대학 졸업의 경우 졸업 이후 4년 이상)이 있다. * 판단기준 : 기관·기계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* 승무경력 인정 (승무경력 기준) 순수승선일(유급휴가 제외)	☐	
요건 2	① 대학(또는 전문대학)의 기관·기계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다. * 판단기준: 대학졸업증명서 상 전공 또는 학과명 (부전공 / 제2전공 인정)	☐	
	② ①에 따른 졸업일 이후 1년 이상의 대행 검사기관의 수습 경력을 보유하였다. * 대행검사기관 : 선급법인	☐	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

구분	점검 사항	확인	비 고
요건 3	선박검사관으로서 경력이 있다. *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해양수산부 소속 선박검사관	☐	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
요건 4	3급기관사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. * 산정 제외 : 3급해기사 자격취득을 위한 실습 경력 * 판단기준: (승선)승무경력증명서 또는 (승선外)경력증명서 * 경력기준 : (승선)순수승선일(유급휴가 적용제외)	☐	
요건 5	기계기술사, 산업기계설비기술사 또는 조선기술사 자격을 취득하였다.	☐	
요건 6	일반기계기사 자격 취득한 이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다.	☐	
상기 6개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			

☐ 운항관리직

구분	점검 사항	확인	비 고
요건 1	① 3급 이상의 해기사(항해사, 기관사 또는 운항사) 자격을 취득하였다. * 면허 종류 무관(어선 포함) *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실효된 경우, 재발급 필요 (공고마감일 전까지)	☐	
	② ①에 따른 해기사 자격 취득일 이후 승선경력이 3년 이상이다. * 산정 제외 : 3급 해기사 자격취득을 위한 실습 경력 * 판단기준 : 승무(승함)경력증명서 * 경력기준 : 유급휴가일수 포함	☐	유급휴가 산정 「선원법」 제70조
상기의 요건을 갖춘 사람			

* 산정 : 승선경력(승무경력증명서 상 총 경력) - 3급 미만경력 + 유급휴가일 ≥ 36개월

□ 연구조사직(해사정책 · 연구)

구분	점검 사항	확인	비 고
예시 1	① 관련분야의 학사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을 가지고 있다. * 관련분야 : 해양·수산 계열, 조선·선박·교통 계열, 경영·정책·국제 계열 ** 관련분야 경력 : 해사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, 연구원, 선급, 해운(승선), 조선소, 해운(업체) 등 *** 판단기준 -(학위) 대학졸업증명서 상 전공 또는 학과명 (부전공 / 제2전공 인정) -(경력)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▶ 학위취득일 이후의 경력만을 인정	☐	학위 간 분야가 다른 경우 요건에 따른 학위만 인정*
예시 2	② 관련분야의 석사 학위 를 취득하였다. * 관련분야 : 해양·수산 계열, 조선·선박·교통 계열, 경영·정책·국제 계열 ** 판단기준: 학위증명서 상 전공 또는 학과명 (부전공 / 제2전공 인정)	☐	
상기 2개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			

* 예시 1에서 학사학위는 비관련 분야이면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요건 충족되는 경우 : 불인정

* 예시 2에서 박사학위 취득자가 석사(다른분야), 박사(관련분야)인 경우 : 불인정

□ 연구조사직(기상예보)

구분	점검 사항	확인	비 고
예시 1	① 관련분야* 학사 학위를 취득 후 2년 이상 기상예보업무**를 수행한 사람으로서, 공고마감일 기준 유효한 기상예보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. * 관련분야 : 기상학, 대기과학, 지구과학, 물리학, 천문학, 수학, 통계학 * 판단기준 -(학위) 대학졸업증명서 상 전공 또는 학과명 (부전공 / 제2전공 인정) -(경력)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▶ 학위취득일 이후의 경력만을 인정	☐	학위 간 분야가 다른 경우 요건에 따른 학위만 인정*
예시 2	② 관련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공고마감일 기준 유효한 기상예보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. * 관련분야 : 기상학, 대기과학, 지구과학, 물리학, 천문학, 수학, 통계학 * 판단기준: 학위증명서 상 전공 또는 학과명 (부전공 / 제2전공 인정)	☐	
상기 2개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			

* 예시 1에서 학사학위는 비관련 분야이면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요건 충족되는 경우 : 불인정

* 예시 2에서 박사학위 취득자가 석사(다른분야), 박사(관련분야)인 경우 : 불인정